

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Ⅱ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「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」을 위한 업무협약

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‘치매로부터 안전한 무주’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제 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세부내용 및 추가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.

제3조(협약내용)

“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”와 “무주군 치매안심센터”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업
- ②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- ③ 상호 각종 활동과 행사 초청 및 개최 협조
- ④ 기타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비밀유지)

- ①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공 기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② 공개 또는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기관의 비밀유지의무는 업무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.

제5조(협약기간)

“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”와 “무주군 치매안심센터”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협약 이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9월 9일

 한국농어촌공사
무진장지사

지사장 이 양 희

이 양 희

 무 주 군
치매안심센터

센터장 홍 찬 표

홍 찬 표.